



■■■■ KIEM REPORT - 동향

민간위탁 정보공개 의무의 도입

법률 제정에 앞서 대통령령이 도입한 세 유형의 공개 의무

작성	위탁관리 본부장
검수	연구소장
www.kiem.re.kr	

요약

개정 의 실체

대통령령 제35366호 (2025. 3. 4. 공포·시행)

국가 단위 민간위탁의 모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25년 3월 4일 개정되어, 위탁기관에 **위탁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새로 부과되었음. 종전에 이 규정은 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었을 뿐 **대외 공개를 요구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

도입된 공개 의무는 하나가 아니라 **위탁의 세 유형**에 걸쳐 있음 — 계약을 체결한 때 (제13조제3항), 수탁기관이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때(제13조의2제2항), 그리고 계약을 해제·해지한 때(제14조제4항 후단)임. 시작과 중간과 끝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구성임.

부칙은 여기에 **소급 장치**를 더하였음. 개정 시행 당시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므로(부칙 제5조), 새로 체결하는 계약뿐 아니라 **진행 중인 위탁 전부**가 공개 대상이 되었음.

공개 의무의 부재는 오래 지적되어 온 문제임. 위탁은 행정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은 두 당사자에게만 있었고, 어느 사무가 누구에게 얼마 동안 맡겨져 있는지를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음**. 이번 개정은 그 확인의 통로를 조문으로 만든 것임.

이 개정이 갖는 또 하나의 뜻은 시점에 있음. 2024년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공개 의무를 먼저 도입**한 것임. 이 보고서는 개정 전후의 조문을 대조하고, 적용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총위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임. 개정 이유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서술은 **조문의 문언과 구성에서 읽은 범위**에 그침.

공포·시행	공개 국면	신설 조항	기존 위탁 공개기한
2025. 3. 4.	3개	4개	1개월

보고서 핵심

이 개정은 위탁의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임. 선정의 기준이나 심의의 과정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 동안 맡겼는가**를 알리도록 한 것이므로, 위탁기관의 실무에는 **공개 항목의 상시 관리**라는 새로운 일이 생김. 다만 이 규정은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의무는 여전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I. 개정의 내용

01 제13조의 신설 조항

계약 체결의 공개

제13조제3항·제4항

종전 제13조는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제1항)과, 계약 내용에 목적·수수료 또는 비용·위탁기간·수탁기관의 의무·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제2항)임. 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만 정하고 있었음.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신설된 제3항·제4항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366호, 2025. 3. 4. 공포·시행) 신설 조항

표 1. 제13조의 개정 전후 구성

구분	개정 전	내용
제1항	있음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2항	있음	계약 내용에 목적·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위탁기간·수탁기관의 의무·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제3항	신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무의 내용·근거·민간수탁기관·위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함
제4항	신설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료: 2024. 10. 8. 시행본과 2025. 3. 4. 시행본의 제13조를 본 연구소가 대조

제3항이 정한 공개 항목은 **넷임 — 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임. 「등」이 붙어 있어 열거된 넷에 한정되지 아니하나, 최소한 이 넷은 공개하여야 하는 구조임. 공개의 장소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특정되어 있어, 청구가 있을 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게시하여 두는 방식**임.

I. 개정의 내용 (계속)

02 사전 게시라는 방식

청구 공개와의 차이

제13조제3항의 문언

이 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와 갈리는 자리임. 정보공개법은 **청구가 있을 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알리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데 견주어, 이 조문은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관이 먼저 게시**하도록 정함. 확인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청구할지 알지 못하여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큼.

공개의 계기를 **계약의 체결**에 둔 것도 확인할 대목임. 위탁의 결정이나 수탁기관의 선정이 아니라 계약이 맺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공개 의무가 생기지 아니함. 선정의 공정성에 관한 정보 — 심사 기준·배점·심사 결과 — 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며, 그 층위의 공개는 각 기관의 지침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사전 게시 방식은 이행 여부의 확인도 쉬움. 청구 공개는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되므로 이행 여부를 밖에서 알기 어려우나, 사전 게시는 **홈페이지를 보면 게시되었는지 드러남**. 제재 조항이 없는데도 실효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점에 있음.

표 2. 두 공개 방식의 대조

구분	청구에 따른 공개	이 조문의 사전 게시
시작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됨	계약 체결이라는 사실이 생기면 의무가 발생함
범위	청구인이 특정한 정보	조문이 정한 항목 — 사무의 내용·근거·수탁기관·위탁기간 등
확인	청구인만 결과를 알게 됨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행 점검	밖에서 이행 여부를 알기 어려움	게시 여부가 그대로 드러남

자료: 제13조제3항의 문언과 일반적인 청구 공개 절차를 본 연구소가 대조. 두 방식은 서로 배제하지 아니하며, 이 조문의 게시가 있어도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가능함

두 방식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임. 이 조문에 따라 게시하였다고 하여 다른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배제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청구에 응하였다고 하여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도 아니함. **두 절차는 각각의 근거에 따라 따로 작동함.**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담당의 배치에도 영향을 줌. 이 조문의 게시는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행하여야 하는 일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맡겨 두면 게시가 늦어질 수 있음.

I. 개정의 내용 (계속)

03 계약 포함사항과 공개 항목

두 목록의 차이

제13조제2항·제3항

여기서 확인할 것은 **제2항과 제3항의 항목이 다르다**는 점임. 제2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목적·**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위탁기간·수탁기관의 의무·계약 위반 시의 책임을 들고 있으나, 제3항이 공개 항목으로 든 넷에는 **수수료 또는 비용이 들어 있지 않**임. 계약에 담아야 할 것과 밖에 알려야 할 것이 같지 아니한 구성임.

표 3. 계약 포함사항과 공개 항목의 대조

구분	계약 포함(제2항)	공개(제3항)
민간위탁의 목적 / 사무의 내용	○	○
위탁의 근거	—	○
민간수탁기관	계약 당사자	○
위탁기간	○	○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	명시 없음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 시의 책임	○	명시 없음

자료: 제13조제2항과 제3항의 열거 사항을 본 연구소가 대조. 제3항은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열거 밖을 배제하지 않

수수수료·비용이 공개 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음**.

제3항이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열거를 예시로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명시된 넷과 달리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기관의 판단에 맡겨진 부분이 됨.

두 목록이 갈리는 방향도 한쪽만은 아님. 제3항에는 있고 제2항에는 없는 항목으로 **위탁의 근거**가 있음.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은 아니나 공개할 때에는 밝히도록 한 것으로, 그 위탁이 어느 법령에 따른 것인지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구성으로 읽을 수 있음.

제4항은 예외를 두었음.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외의 사유를 사무의 성질에서 찾고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의 사정이나 기관의 편의는 사유가 되기 어려운 문언임. 예외를 적용하려면 그 판단의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뒤의 확인에 대비가 됨.

I. 개정의 내용 (계속)

04 재위탁과 해제·해지의 공개

재위탁의 공개

제13조의2제2항

공개 의무는 계약 체결에서 끝나지 아니함. 제13조의2는 민간수탁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 **위탁기관이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제13조제3항·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주목할 점은 공개의 주체임. 재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수탁기관이나,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위탁기관**임. 수탁기관이 사무를 다시 맡기더라도 그 사실을 알릴 책임은 위탁한 행정기관에 남는다는 구조이므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해제·해지의 공개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지휘·감독)에도 조항이 더해졌음. 종전 제14조는 제3항까지 지휘·감독과 취소·정지를 정하고, 제4항에서 취소·정지 시의 사유 통보와 의견 진술 기회를 정하고 있었음.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문은 없었음.**

제14조(지휘·감독) — 신설·개편된 제4항·제5항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개편된 조항

재위탁 자체는 제13조의2제1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전부를 넘길 수 없다는 제약이 먼저 있고, 그 위에 공개 의무가 부가된 구조임. 재위탁의 허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앞선 보고서에서 다루었음(**KIEM-REPO-2022-01**).

제4항은 **해제·해지의 근거와 그 사실의 공개**를 함께 담았음. 제5항은 종전에 취소·정지에만 적용되던 사유 통보와 의견 제출 기회를 **해제·해지까지 확장**한 것임. 공개 의무가 늘어나는 한편 수탁기관의 절차적 권리도 함께 넓어진 구성임.

I. 개정의 내용 (계속)

05 세 유형의 종합

개정 전후의 대조

2024. 10. 8. 시행본과 2025.
3. 4. 시행본

표 4. 개정 전후의 조문 대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계약 체결)	제1항·제2항 —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 내용에 포함할 사항	제3항 신설 — 사무의 내용·근거·수탁기관· 위탁기간을 홈페이지에 공개 제4항 신설 —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예외
제13조의2 (재위탁)	제1항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재위탁 가능	제2항 신설 — 위탁기관이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 (제13조제3항·제4항 준용)
제14조 (지휘·감독)	제3항 —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의 취소·정지 제4항 — 취소·정지 시 사유 통보와 의견 진술 기회	제4항 신설 —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근거와 그 사실의 공개 제5항 — 사유 통보와 의견 제출 기회를 해제· 해지까지 확장

자료: 2024. 10. 8. 시행본(대통령령 제34936호)과 2025. 3. 4. 시행본(제35366호)을 본 연구소가 대조

세 조문을 겹쳐 보면 공개의 대상이 위탁의 **시작·중간·끝**에 각각 놓여 있음이 확인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수탁기관이 사무를 다시 맡겼다는 사실, 계약이 중도에 끝났다는 사실임. 한 국면만 공개하면 나머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셋을 함께 두어 **위탁의 이력이 이어져 보이도록** 한 구성으로 이해됨.

개정 전의 규정이 공개를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 규정의 성격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범이어서, 조문의 시선이 **행정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에 놓여 있었음. 지휘·감독·보고·취소·정지가 모두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조문임.

이번 개정은 그 시선에 **바깥을 향한 조문**을 더한 것으로 읽을 수 있음. 공개는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므로, 규정의 성격이 내부 관계의 규율에서 **대외적 확인 가능성**까지 넓어진 것임.

공개되는 것이 **결과**라는 점도 이 개정의 성격을 정함. 선정의 기준이나 심의의 과정, 평가의 결과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며,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기간 맡겼는가」와 「그 계약이 어떻게 끝났는가」가 공개 대상임.

II. 적용의 범위

06 부칙의 소급 장치

진행 중인 위탁

부칙 제5조

새로 만들어진 의무는 대개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됨. 이 개정은 그와 달리 **이미 진행 중인 위탁**까지 공개 대상으로 삼았음.

부칙 제5조(민간위탁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5366호 부칙

이 특례가 없었다면 공개의 효과는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나타났을 것이고, 위탁기간이 3~5년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가 공개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을 것임. 부칙 제5조는 그 시차를 없애 **시행 한 달 뒤에는 진행 중인 위탁이 모두 게시되어 있도록** 한 것임. 재위탁도 괄호로 명시하여 포함하였음.

해제·해지에 관하여도 적용례가 있음. 부칙 제2조는 제1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을 시행 이후에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계약이 언제 맺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시행 이후에 끝나는 계약이면** 공개와 의견 제출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임.

표 5. 부칙이 정한 적용의 시간 범위

구분	대상	적용
부칙 제5조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 포함)하고 있는 사무	시행 후 1개월 이내 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
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	시행 이후에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4조제4항·제5항을 적용

자료: 대통령령 제35366호 부칙 제2조·제5조

두 부칙의 방식은 다름 — 제5조는 **기한을 정한 이행 의무**이고, 제2조는 **적용 시점을 앞당긴 적용례**임.

두 부칙을 함께 보면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짐 — 공개 의무를 **앞으로 맺을 계약이 아니라 지금 있는 위탁 전부에** 미치게 하려는 것임. 위탁기관의 실무에서는 시행일 직후 한 달이 **기존 위탁 사무를 전수 정리하는 기간**이었음.

II. 적용의 범위 (계속)

07 이 규정이 미치는 곳

국가 사무의 모법령

제1조

공개 의무의 범위를 정하려면 이 규정 자체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제1조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위임·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국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의 모법령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그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표 6. 층위별 근거

구분	근거	공개 의무
국가 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제3항·제13조의2제2항·제14조제4항으로 도입됨
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님

자료: 각 규범의 목적·근거 조항을 본 연구소가 정리

공개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도 이 규정이 정하고 있음. 제11조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네 가지를 들고 있음 —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임. 공개 의무는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위탁에 미침.

같은 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항과 새 공개 의무를 함께 보면, 위탁의 타당성을 안에서 점검하는 절차와 그 결과를 밖에 알리는 절차가 **같은 규정 안에 나란히 놓이게 된 것임**.

다만 실무에서 두 층위가 무관한 것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는 상당수가 이 대통령령의 체계를 참고하여 만들어져 왔고, 조문의 구성과 용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음. 모법령에 공개 조문이 들어간 이상 **조례 개정의 참고 규정례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확산 여부는 이후의 조례 개정에서 확인될 사항임.

III. 제정 시도와의 관계

08 법률에 앞선 하위규범

제정 시도의 경과

본 연구소 정리

민간위탁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음. 가장 최근의 것이 2024년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며, 그 궤적은 앞선 보고서에서 다루었음(**KIEM-REPO-2024-03**).

표 7. 제정 시도와 이번 개정의 시점

구분	내용
2024. 9.~11.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4. 12.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 3.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시행 — 공개 의무 도입

자료: 제정안의 경과와 대통령령의 공포일을 본 연구소가 정리. 제정안의 국회 결과는 이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확인된 범위임.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공개 의무를 먼저 도입한 것이** 이번 개정의 위치임. 일반법 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 견주어, 대통령령의 개정은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절차임. 제도 개선의 필요가 확인되었을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하위규범**이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음.

하위규범이 먼저 움직이는 방식에는 이점이 있음. 법률 제정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 견주어, 대통령령의 개정은 정부 안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 있을 때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도입**하는 선택이 가능한 것임.

또한 이번에 도입된 것이 **공개**라는 점도 이 선택과 맞물림. 공개는 새 기구를 만들거나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여도 이행할 수 있고, 이미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일에 가까움. **하위규범으로 도입하기에 부담이 크지 아니한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하위규범으로 도입한 데 따르는 한계도 있음. 대통령령은 **국가 사무**에만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일반법이 제정되었다면 적용 범위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함께 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 논의는 계속되는 상태임. 이번 개정이 그 논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조치**로 읽는 편이 조문의 범위에 맞음.

IV. 실무의 대응

09 공개 항목의 관리

무엇을 언제 올리는가
본 연구소 정리

조문을 실무의 절차로 옮기면 다음과 같음. 공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위탁의 이력에 따라 갱신되는 일임**.

표 8. 국면별 공개 사항

순번	국면	공개 내용	근거
1	계약 체결	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제13조제3항
2	재위탁	재위탁 내용 등 — 공개 주체는 위탁기관	제13조의2제2항
3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	제14조제4항
4	기존 위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무(재위탁 포함) — 시행 후 1개월 이내	부칙 제5조

자료: 개정 조문을 본 연구소가 국면별로 정리
이 가운데 실무의 부담이 큰 것은 **2번**임. 재위탁은 수탁기관이 하는 행위인데 공개 의무는 위탁기관에 있으므로, 위탁기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 계약서나 협약에 **재위탁 시 통보 의무**를 두어 두는 편이 이행의 전제가 됨.

1번과 4번은 성격이 다름. 4번은 시행 직후 한 차례로 끝나는 **일회성 정비**였던 데 견주어, 1번은 계약을 맺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상시 절차**임. 정비를 마친 뒤에도 새 계약이 생길 때마다 계시가 이어져야 하므로, 계약 담당과 홈페이지 관리가 같은 자료를 보고 움직이도록 연결해 두는 편이 누락을 막는 방법임.

3번도 관리가 필요함. 해제·해지는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사유가 생겼을 때 이루어지므로, 절차 안에 **공개 단계를 넣어 두지 아니하면 빠지기 쉬움**. 제5항의 사유 통보와 의견 제출 기회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해지 절차를 하나의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함.

해지의 공개는 수탁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사항임. 계약이 중도에 끝났다는 사실이 기관 홈페이지에 남으므로, **사유 통보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정한 제5항이 함께 신설된 것도 그 점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공개에 앞서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뒤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 문서와 의견 제출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함.

IV. 실무의 대응 (계속)

10 조문 미규정 사항

해석에 맡겨진 부분

조문의 문언

새 조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남아 있음. 실무에서는 각 기관이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이후의 지침이나 사례로 정리될 여지가 있음.

표 9. 조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구분	내용
공개 시점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며칠 이내인지 는 정하지 아니하였음. 기존 위탁에만 1개월의 기한이 있음(부칙 제5조)
게시 기간	공개한 정보를 얼마 동안 유지 하여야 하는지, 위탁기간이 끝난 뒤 내려도 되는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
공개의 형식	홈페이지의 어느 자리에 어떤 형식으로 올릴 것인지 — 목록의 형태인지 개별 게시인지
「등」의 범위	열거된 네 항목 밖에 무엇을 더 공개할 것인지 — 위탁금액의 포함 여부가 실무의 물음이 됨
미이행의 효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나 시정 절차 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자료: 개정 조문의 문언을 근거로 본 연구소가 정리

이 가운데 실무의 관심이 큰 것은 **「등」의 범위**임. 제13조제3항이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네 항목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탁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가 기관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음. 계약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는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조문이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단정하기 어려움**.

게시 기간도 실무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임. 위탁기간이 끝난 계약의 정보를 내려도 되는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위탁만 게시하는 방식과 지난 위탁까지 남겨 두는 방식이 모두 가능함. 어느 쪽을 택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무의 위탁 이력이 이어져 보이는지**가 달라짐.

미이행의 효과가 없다는 점도 이 규정의 성격을 정함.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조문에 없으므로, 실효는 각 기관의 이행과 **감사·점검을 통한 확인**에 달려 있는 구조임.

V. 종합

11 개정의 함의

세 가지 정리

본 연구소 정리

표 10. 개정의 성격

구분	내용
공개 범위	절차가 아니라 결과 를 공개하도록 함 — 선정 기준·심의 과정·평가 결과는 대상이 아님
적용 범위	국가 사무 의 민간위탁에 한정됨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도입 방식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으로 먼저 도입 — 부칙으로 기존 위탁까지 포괄

자료: 본 보고서 I~IV장의 정리

세 가지를 겹쳐 보면 이 개정은 **적은 비용으로 확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해됨. 심의의 과정을 공개하려면 회의록과 평가자료의 정리가 따르나, 계약의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옮기는 일에 가까움. 부칙으로 기존 위탁까지 한 달 안에 게시하도록 한 것도 그 부담이 크지 아니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임.

남은 과제는 두 층위임. 첫째는 **공개의 내실**임 — 게시 여부가 아니라 게시된 내용이 실제로 확인에 쓰일 만한 것인지는 이행의 추적을 보아야 판정할 수 있음. 둘째는 **층위의 확산**임 — 위탁 사무의 다수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조례 층위에서 같은 규율이 자리 잡는지가 이 개정의 실질적 파급을 정함.

이 개정을 앞선 보고서들과 겹쳐 보면 위치가 드러남. 위탁의 규율은 **선정·계약·감독·갱신**의 국면마다 따로 발전해 왔고, 그 가운데 **대외 확인**은 오래 남아 있던 공백이었음.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국가 사무의 층위에서 채운 것이며, 채운 방식은 절차의 공개가 아니라 **결과의 게시**였음.

결과의 게시가 갖는 효용은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음. 각 기관이 같은 항목을 게시하면 사무별·기관별로 어떤 위탁이 얼마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조할 수 있고, 그 대조가 쌓이면 위탁의 전체 규모와 분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됨. 다만 이는 게시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형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확인의 실익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위탁기관의 실무에서는 당장 **공개 항목을 상시 관리하는 절차**를 갖추는 일이 과제가 됨. 체결·재위탁·해지의 세 유형이 모두 공개 대상이므로, 계약 관리 대장과 홈페이지 게시가 **같은 자료를 보고 움직이도록** 연결해 두는 편이 이행의 누락을 막는 방법임.

근거와 한계

인용한 자료

표 11. 이 보고서가 인용한 규범

구분	회차	인용 부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366호 2025. 3. 4. 공포·시행	제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부칙 제2조·제5조
같은 규정 (개정 전)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시행	제13조, 제14조 — 대조용
지방자치법	현행	제117조제3항 — 자치단체 위탁의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별 본문을 확인한 것임

이 보고서의 한계

유의 사항

2025년 7월까지 확인한 조문 기준임. 이 보고서는 **개정 조문의 문언을 대조하여 정리한 것**이며, 개정 이유서와 입법예고안의 조문별 제·개정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입법 의도에 관한 서술은 조문의 구성에서 읽은 범위에 그침**. 「등」의 범위와 공개 시점·게시 기간에 관한 서술은 **조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지적한 것이지 해석을 제시한 것이 아님**. 각 기관의 이행 실태와 게시 사례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개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는 다루지 못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공개 규정 현황도 이 보고서의 범위가 아님. 실무 적용 시에는 적용 시점의 **현행 조문과 소관 부처의 지침**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함께 볼 자료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의 경과와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의 궤적**(KIEM-REPO-2024-03), 재위탁과 재계약의 제도 구조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규율**(KIEM-REPO-2022-01)에서 각각 다루었음.

문의

내용의 문의는 **한국관리위탁연구소**로 하시기 바람.